

의안번호	제 19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시행과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 태양광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3조)
- 국내외 태양광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안 제15조)
-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7조)

## 3. 의안전문 : 불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 6. 비용추계서 : 불 임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태양광산업 관련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태양광산업 관련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4.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5. 태양광산업 특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태양광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태양광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태양광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2. 태양광기술센터 및 모듈연구센터의 운영

3. 태양광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4. 에너지산학융합지구의 조성
5. 태양광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태양광 관련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7. 태양광 관련 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8. 국내외 산학연 교류·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투자권고) ① 도지사는 태양광 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외 태양광 관련 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을 충청북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요조사)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산업별 육성지원 조례 표준안에 맞게 태양광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항목을 신설 보완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지원

## 3. 관련조문

- 안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
- 안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방원	
사업명	①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② 태양광산업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지원	200,000천원	- 도비	200,000천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장 정경화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300,000
태양광산업육성계획 수립		100,000					100,000
태양광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300,000
	세외수입	1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300,000